

제 365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2.

안 전 행 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전부열

경기도인재개발원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본 동의안은 2022년 11월 2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8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임.

1. 제안이유

가. 경기관광공사는 2014년 1월 現 경기도인재개발원 신관1층 일부 및 4~5층에 입주하여 무상사용 중으로 2022년 12월 31일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 규정에 의거 무상 사용기간을 연장하여 안정적인 사무공간을 확보하고, 도내 관광개발 및 관광진흥사업을 통한 도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무상사용 재산 현황(건물)

종별	재산소재지	공부상 (규모)	연면적 (㎡)	재산가액	
				㎡당 단가(원)	금액(천원)
건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파장동)	철근콘크리트조 (지상 1, 4~5층)	1,944.14	540,934	1,051,651

※ 연면적 : 1,944.14㎡(전용면적 : 1,507.86㎡, 공용면적 : 436.28㎡)

○ 사 용 자 : 경기관광공사

○ 사용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간)

3. 검토의견

가. 제출 취지

- 道 공유재산인 경기도인재개발원 내 건물 일부(신관 1층 일부 및 4~5층)를 경기관광공사가 허가를 받아 무상사용 중이며 그 사용기간이 2022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
- 이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을 2023. 1. 1일부터 2025. 12.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려는 것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¹⁾,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²⁾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 경기관광공사 무상사용 추진경과 >

- ▶ ('12. 8월) 경기관광공사 입주(사용) 결정
- ▶ ('13.10월) 공유재산 사용 임대료 감면 요청 및 감면대상 여부 검토
- ▶ ('13.12월) 도의회 동의안 의결
- ▶ ('16.11월)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 신청
- ▶ ('16.12월) 도의회 동의안 의결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
- ▶ ('20. 4월) 도의회 동의안 의결 / 공유재산 무상사용 허가(연장)
- ▶ ('22. 9월) 경기도 공유재산심의회 의결

나. 검토의견

- 경기관광공사는 「지방공기업법」 제2조 및 「경기관광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2002년 5월에 설립되어 경기도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22년 기준 42개 사업에 297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 중임

1)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2)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

< 2022년도 경기관광공사 주요사업 >

핵심 가치	추진전략	세부 전략사업
고객	지속가능 경기관광생태계 조성	1 코로나19 관광업계 회복 지원
		2 상생하는 경기관광기반 조성
안전	새일상 시대 안전한 경기관광 브랜드 확산	3 안전한 일상여행 브랜드 발굴
		4 다양한 매체 활용 소통 강화
미래	미래관광 기반 국내관광 활성화 및 외래객 선제 유치	5 지역관광거점 육성 국내관광 활성화
		6 해외시장 점진적 회복 선제 대응
평화	DMZ 접경지역 평화·생태관광 허브화	7 접경지역 평화·생태관광 기반 확대
		8 임진각평화누리 일원 효율적 관리 운영
성장	新 사업영역 개척 및 경영시스템 고도화	9 31개 시·군 관광정책 연계 사업
		10 투명경영 조직문화 확립

출처 : 경기관광공사 <2022년 주요 업무보고>

- 경기관광공사의 안정적 사무공간 확보를 통해 경기도의 관광개발 및 관련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무상사용 허가 동의는 타당해 보임
- 다만, 공유재산 사용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공유재산심의회, 의회 등의 등 필요한 절차를 이행함에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담당 부서의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참고

인재개발원 내 공유재산 사용 현황

(’22. 9.30. 기준, 단위: ㎡ / 천원)

기관명	종류	재산명	사용 면적 (전용)	사용기간		목적	사 용 료		비고
				시작일	종료일		’21년	’22년	
경기연구원	건물	신관	5,930	’22.07.01	’25.06.30	사무실	무 상		
경기관광공사	건물	신관	1,508	’20.01.01	’22.12.31	사무실	무 상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건물	신관, 도서관	1,936	’20.02.29	’23.02.28	사무실	207,181	231,970	
경기복지재단	건물	신관	1,301	’20.02.29	’23.02.28	사무실	149,444	170,195	
경기도평생교육 진흥원	건물	신관	577	’20.01.01	’22.12.31	사무실	66,636	75,721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건물	도서관 건강증진센터	617	’20.03.01	’22.12.31	사무실	26,341	26,350	
(주)아워홈	건물	식당	1,313	’20.01.01	’22.12.31	구내 식당	41,218	44,076	
구현우	건물	신관, 본관	170	’19.01.14	’21.12.31	매점 카페	52,300	-	
(주)오토벤딩코리아	건물	신관, 본관	170	’22.01.25	’22.01.24	매점 카페	-	48,120	
에스트래픽(주)	토지	체육관 주차장	3	’20.08.01	’23.07.31	전기 충전기	191	208	
(주)KT	건물 (옥상)	온누리관	11	’22.08.01	’23.07.31	통신 중계기	879	948	
SKT(주)	건물 (옥상)	온누리관	10	’22.08.01	’23.07.31	통신 중계기	879	948	

※ 무상사용 허가 규정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개별법

- 경기연구원: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유재산의 무상 대부 등)
- 경기관광공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제1항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5항제3호 (사용료 감면) ※ 도의회 동의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라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아들인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3.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4.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7조(사용료 감면) ⑤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을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일정 기간 사용허가를 하는 경우
2.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을 위하여 이전하는 공익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익시설과 직접 관련된 재산을 그 공익시설을 이전하는 기간 동안 사용하려는 경우
- 2의2.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의 비영리사업을 위한 경우